

발 간 등 록 번 호

11-1670000-000177-14

<https://naacc.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법 령 집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2022.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 차

CHAPTER 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1
1. 개정연혁	3
2. 행복도시법 및 시행령 전문	16

CHAPTER 0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75
--	----

CHAPTER 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93
--------------------------------	----

부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119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126





CHAPTER 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행복도시법

① 법률 제7391호, 2005. 3. 18.,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지정(법 제11조 및 제14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예정지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함.
- 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및 건설 기본계획 수립(법 제16조 및 제19조)
 - (1)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이전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되,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부가족부를 제외하도록 함.
 - (2)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등이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기구 설치(법 제29조,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
 - (1)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두도록 함.
- 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법 제44조 및 제45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되, 그 세입은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청사·부대 시설 및 그 부지의 매각대금·사용료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함.
- 마. 국가예산지출의 상한(법 제51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8조 5천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② 법률 제8126호, 2006. 1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원형지 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기기관 등에 토지를 조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부 광역교통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일부 권한을 예정지역 등 안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사하도록 하며, 예정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③ 법률 제8869호, 2008. 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④ 법률 제11189호, 2012. 1.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설전문인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⑤ 법률 제11585호, 2012. 1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청이 조성한 시청사 등 국유재산 및 학교의 물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감면하여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특례를 신설하고, 세종시 내 우수 교육환경 및

외국인의 장기 거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 의제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청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토지수용 및 통행의 금지나 제한 등을 적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기간을 현재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협의 간주규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3항).
- 나. 건설청이 조성한 공공건축물 등 국유재산 및 학교의 물품 등을 지자체에 무상 관리전환이나 양여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안 제46조의2 신설).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 라. 관련법령 폐지에 따라 국가지리정보체계 계획수립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현행 제60조의2제1항제2호 삭제).
- 마. 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업무의 경우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건설청이 계속 수행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 바.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법」의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등의 규정 적용 시 도로관리청을 건설청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안 제63조제4항 신설).
- 사. 국토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63조의5 신설).
- 아. 세종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의6 신설)

⑥ 법률 제12081호, 2013.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기능과 대학, 연구소, 종합병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현행법은 대학, 연구소, 종합병원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인바,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정지역의 해제 시기를 조정하고, 공원 점용허가 사무를 건설청장이 한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완료공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지역 해제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호).
- 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 지형도면 고시 시기에 관한 특례를 둘 실익이 없어,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 다.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 12. 12. 시행)에 따라 건설청 차장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38조제2항).
- 라.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청장의 업무에 투자 유치를 포함함(안 제39조제16호 신설).

- 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신설함(안 제45조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 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공원조성 등을 위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건설청장이 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사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4호 신설).
- 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인바, 기업들은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초기자금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고 있어 건설청장이 부지를 매입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 저렴하게 분양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첨단지식기반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63조의7 신설).
- 아.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8 신설).

⑦ 법률 제12754호, 2014. 6.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정지역등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 행위를 한 경우가 모두 부당하게 보상액을 증가시키려는 행위이지만 현행법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경우의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표현의 정비 등을 통하여 현행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으면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광역시·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시”로,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70조).

나. 예정지역등 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0조).

⑧ 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대상 제외 부(部)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종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⑨ 법률 제16003호, 2018. 12.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한 도시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추가사업을 실시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한 시설 등을 유상으로 재매입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건설청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⑩ 법률 제15734호, 2018. 8.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4948호 시행령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2019. 1. 25. 시행예정)에 따르면 종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던 건축허가 등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하게 되고,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개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의 조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허가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건축조례의 제·개정 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⑪ 법률 제1614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그 수립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활성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7조제2항 및 제4항).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9조제1항 및 제3항).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최대 세 차례로 제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 신설).
- 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⑫ 법률 제17873호, 2021. 1.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유치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국가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⑬ 법률 제17947호, 2021. 3.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에서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해당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바,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기본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책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하고,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설청장에게 계획·관리권한을 부여함(제15조의2 신설).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제60조제6항 신설).

⑭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운영의 효율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및 지식산업센터를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을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별표).

행복도시법 시행령

① 대통령령 제18831호, 2005. 5. 18.,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등을 이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91호, 2005. 3.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구역등의 존치 여부 협의기준(영 제3조)

- (1) 법률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안에 이미 지정된 구역등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과 협의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2) 건설청장은 협의를 하는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난개발의 초래가능성 및 사업의 진척도를 검토하도록 함.
-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에 부합되고 난개발의 우려가 적은 구역등 및 사업계획만을 존치·시행하게 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영 제4조)

- (1) 법률에서 주변지역 안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행위를 제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완화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변지역의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垓)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3)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영 제15조)

- (1) 법률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하에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설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3) 기반시설조정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원활한 조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입주시기에 맞추어 기반시설이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영 제19조)

- (1) 법률에서 조성토지의 공급절차·기준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3) 조성토지의 용도에 따라 공급대상·방법 및 가격을 달리 정함으로써 적절한 요건을 갖춘 자가 적정가격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아 당초 공급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영 제28조)

- (1) 법률에서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가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 (2)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치·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정함.
- (3) 주변지역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대통령령 제19753호, 2006. 12.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를 축소하여 충분한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대상이 되는 공공업무시설의 범위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동사무소, 우체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③ 대통령령 제19974호, 2007. 3.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변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재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④ 대통령령 제20735호, 2008. 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등의 명칭을 국토해양부장관 등으로 변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869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⑤ 대통령령 제21133호, 2008. 11.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변지역 중 집단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주변지역 집단취락지역의 행위제한 완화(영 제4조제2호가목)

- (1) 주변지역의 집단취락지역 중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시가화조정 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주변지역의 집단취락지역 중 건설청장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에서 가능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함.

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법(영 제28조제2항)

- (1)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종류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원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의 행정리별로 면적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배분하고, 주변지역의 지원대상 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공동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함.

⑥ 대통령령 제23031호, 2011. 7.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입주를 지원하고, 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주거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임.

가. 공공기관 사무소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제7호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사무소 신축 용도로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함.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주민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안 제2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주거시설을 건립·제공하여 재정착을 지원하도록 함.

⑦ 대통령령 제24409호, 2013.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한 국유재산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585호, 2012. 12. 18. 공포, 2013.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중대형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⑧ 대통령령 제25169호, 2014. 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08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등이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제출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매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등 30명으로 회의를 구성하도록 하여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⑨ 대통령령 제28827호, 2018. 4.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의 대학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대학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학 모델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학과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공동캠퍼스의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고 있는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⑩ 대통령령 제29501호, 2019. 1.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건축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4호, 2018. 8. 14. 공포, 2019. 1. 25.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건축조례 개정 요청사항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의 송부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⑪ 대통령령 제29664호, 2019.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그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2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를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장은 관보에, 관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공보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⑫ 대통령령 제31816호, 2021. 6.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가 시설의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공공기관 부설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⑬ 대통령령 제32101호, 2021. 1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과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에는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구역 내 연계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행복도시법 및 시행령 전문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p> <p>[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p> <p>[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p>	<p>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4조(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p> <p>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정보도시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p> <p>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①</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 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하기 전에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제한지역·제한내용·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①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기획재정부장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지구·지역의 지정 목적이 없어지거나 그 구역·지구·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6. 11.]</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p> <p>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p>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p>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 500분의 1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를 말한다)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송부 및 열람을 갈음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할 때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6. 11.]</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①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② 예정지역등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③ 예정지역등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승인된 구역·지역·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예정지역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사”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개정 2016. 1. 19.〉</p> <p>⑤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 2. 구역등과 사업계획을 존치·시행(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시행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을 기재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구역등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4. 구역등의 경계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5. 구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구역등과 그 인근지역의 기반시설계획서 및 경관계획서(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p>② 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2. 난개발의 초래가능성 3. 사업의 진척도 <p>③ 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예정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②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6.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2. 거주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의 그 토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垓)인 토지(2008년 2월 29일 이후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p>④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의 결정(200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 4. 10.></p> <p>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법 제1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결과 존치하기로 협의한 구역등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시행이 결정된 구역등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건에 따라 보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조치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설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그 계획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3.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8. 11. 26.]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p> <p>③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한 허가·승인 등을 받아(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에게, 주변지역 안에서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정지역: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주변지역: 건설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로부터 	<p>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등)</p> <p>① 법 제15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p> <p>② 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10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p>	<p>다.<개정 2012. 4. 10.> [제목개정 2012. 4. 10.]</p> <p>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법 제15조의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국가의 주요 기능이 추가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가되어 특별관리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착오·누락을 정정하거나 측량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p>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의 목표 2.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3.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관리구역 내 연계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방안 5.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의 이행방안 6. 그 밖에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 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 <p>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p> <p>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0. 24.></p> <p>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2017. 10. 24.> 6. 여성가족부 <p>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0.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p>	<p>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3. 1년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p>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p>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p> <p>⑥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p> <p>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건설청장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31.></p> <p>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제60조제4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8.</p>	<p>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은 읍·면 또는 동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p> <p>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① 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환경·교통·토지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 2.</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12. 31.)</p> <p>③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개정 2018. 12. 31.></p> <p>④ 건설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p> <p>⑤ 건설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8. 12. 31.></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 12. 31.></p> <p>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2. 31.></p> <p>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p> <p>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p>	<p>29., 2013. 3. 23., 2019. 3. 26.)</p> <p>②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는 건설청장은 관보에, 관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공보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 3. 26.></p> <p>③ 법 제17조제1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 12. 15., 2019. 3.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계획인구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법·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법시행규칙·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법시행규칙·지침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을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건설청장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p> <p>⑩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청장 및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p> <p>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p> <p>⑫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31.〉</p> <p>⑬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건설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p> <p>⑭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도지사 및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4. 6. 11.]</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p> <p>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p> <p>④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 2. 민간사업자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말한다.</p> <p>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p> <p>③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 3. 27., 2009. 9. 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p>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형지의 개발 2. 원형지의 개발을 위한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3.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p>[제목개정 2007. 3. 27.]</p> <p>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p>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행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대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대행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행할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행사업”이라 한다)의 개요·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p>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토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목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p>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형지의 개발방향, 원형지의 면적, 원형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 및 조건 등을 정하되, 그에 관한 세부 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7. 3. 27.]</p> <p>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도시정보화의 기본방향 3. 문화재보호의 기본방향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 방안 8.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건설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31.></p> <p>④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31.></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31.></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p> <p>⑦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4. 6. 11.]</p> <p>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p>	<p>4. 도시방호 및 방재의 기본방향</p> <p>② 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고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p> <p>③ 법 제1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3. 26.></p> <p>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 등 도시의 규모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p> <p>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p>

행안부 도시법·시행령

행안부 도시법률관단시법·시행령

행안부 도시법·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p> <p>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5. 교통처리계획 6. 도시문화계획 7. 경관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2.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3. 재원조달계획 14.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p> <p>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31.></p> <p>⑥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p>	<p>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안개요 2. 법 제20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15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안 도서 3. 개발계획안 작성에 사용된 각종 검토서 <p>②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건설청장은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③ 법 제20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4.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정보화계획 2. 문화재보호계획 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지하매설물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4.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p>④ 법 제20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8. 4.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법 제20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p>⑤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17. 10. 24.></p> <p>⑧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p> <p>③ 실시계획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p>	<p>5.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 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p> <p>6.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p> <p>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어야 한다.</p> <p>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p> <p>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지구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p> <p>⑧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22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p>	<p>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략설계도서 2. 계획평면도 3. 재원조달계획서 4.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8.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p>③ 법 제2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2. 4.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p>④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1. 26., 2012. 4.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17. 1. 17., 2020. 3. 31., 2021.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법(물관)단시법·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법(청·지제)·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p> <p>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p> <p>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p> <p>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p> <p>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p> <p>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p> <p>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p> <p>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p>	

행안부 도시법·시행령

행안부 도시법물관단지법·시행령

행안부 청지제·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p> <p>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p> <p>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p> <p>37.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p> <p>②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p>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p> <p>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건설청장은 제63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p>	<p>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및 철도 2. 신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시설 3. 광장 및 녹지 4. 공동구, 상·하수도,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예정지역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p> <p>④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p>	<p>6.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 시설</p> <p>7.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p> <p>제15조 삭제<2008. 10. 20.></p> <p>제16조 삭제<2008. 10. 20.></p> <p>제1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 사실이 관보에 고시된 때에는 관보에 고시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중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중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18조(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p>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토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목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을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형지의 개발방향, 원형지의 면적, 원형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 및 조건 등을 정하되, 그에 관한 세부 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27.]</p> <p>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13. 3. 18.>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 3. 27., 2009. 4. 21., 2011. 7. 14., 2014. 4. 29., 2015.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청사용지·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p> <p>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당해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동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고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p> <p>5. 도시의 미관·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p> <p>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주거·체육·후생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p> <p>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예정지역 안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p> <p>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p> <p>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성토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건설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공급조건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⑥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p>⑦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7. 3. 27.></p> <p>제19조의2(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청사용지·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원형지개발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에게 공급하기가 곤란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p>② 제18조 및 제19조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26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2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p>	<p>18조 및 제19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7. 3. 27.]</p> <p>제20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을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p>⑦ 건설청장 또는 제6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0. 24.></p> <p>③ 제2항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추진기구</p> <p>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p> <p>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22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2. 도로·철도·수도·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3.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4. 하천·유수지·방화시설 등 방재시설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하여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을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0.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 6. 11.]</p> <p>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을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p> <p>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3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33조(소위원회)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p> <p>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p> <p>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31.]</p> <p>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을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31.]</p> <p>제35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14. 6. 11.]</p> <p>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개정 2020. 6. 9.〉</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4. 6. 11.]</p> <p>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영 8.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의 수립 10. 삭제<2017. 10. 24.> 11. 위원회 사무의 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조정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 삭제<2017. 10. 24.>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4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 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p>	<p>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42조(여론의 수렴) 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p> <p>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p> <p>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p> <p>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운영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p>	<p>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영)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p> <p>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p> <p>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 	<p>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해당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의 매각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지출에 관한 사항(가목부터 다목까지는 500억 이상의 지출에 한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될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및 이전 등 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 다.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라. 법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마. 법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에 관한 사항(500억원 이상의 차입에 한한다) <p>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 12.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또는 시설물 2.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 및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p>② 법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p>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small>[시행 2022. 12. 11.]</small> <small>[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small>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small>[시행 2022. 1. 13.]</small> <small>[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small>
<p>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p> <p>4. 제47조에 따른 차입금</p> <p>5.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로 인한 수입금</p> <p>6. 그 밖의 수입금</p> <p>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mall><개정 2021. 1. 5., 2021. 3. 16.></small></p> <p>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p> <p>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p> <p>2.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p> <p>3. 제47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p> <p>4.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p> <p>5.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p> <p>6. 제54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p> <p>7.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용자</p> <p>8. 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p> <p>9. 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p> <p>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p> <p>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p> <p>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mall>[전문개정 2014. 6. 11.]</small></p>	<p>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small><신설 2021. 11. 2.></small></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또는 공공·문화체육시설</p> <p>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p> <p>③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small><개정 2018. 4. 24., 2019. 1. 22., 2021. 11. 2.></small></p> <p>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p> <p>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p> <p>3.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의 수렴에 필요한 비용</p> <p>4.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p> <p>5.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p> <p>6. 법 및 이 영에 의한 각종 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p> <p>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p> <p>8. 위원회 및 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p> <p>9.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p> <p>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용자 등) ①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small><개정 2008. 2. 29.></small></p> <p>②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의 대상사업·신청·원리금상환 등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p> <p>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 건설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47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p>	<p>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2.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 <p>[본조신설 2013. 3. 18.]</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6. 9.></p> <p>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4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p> <p>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5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p> <p>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p> <p>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의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 2.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②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1. 26., 2021. 12.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사업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활편의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溝渠), 오수처리 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주택개량, 마을회관·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다. 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 라.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복지 증진 또는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2. 지원방법 및 지원사업 선정 가. 주변지역에 포함된 행정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배분 나. 주변지역의 행정리별로 가목에 따라 배분 받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각 목의 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공동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p> <p>③ 건설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7.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4.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종류 및 입주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 7. 14.></p> <p>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청장</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축목·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56조(손실보상) ①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p>	<p>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④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3. 27.]</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5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p> <p>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p> <p>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칙</p> <p>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p> <p>②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p> <p>③ 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p> <p>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같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건설청”으로 본다.</p> <p>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p>	<p>제28조의3(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p> <p>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3. 16.></p> <p>⑦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3. 16.> [전문개정 2014. 6. 11.]</p> <p>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p> <p>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전문개정 2017. 10. 24.]</p> <p>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p>	<p>제28조의4(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의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별자치시의회의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p> <p>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14.]</p> <p>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p>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14.]</p>	<p>제28조의5(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속한 부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의 부지로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61조 삭제</p> <p>제62조 삭제</p> <p>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p> <p>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개정 2014. 1. 14.> [전문개정 2014. 6. 11.]</p>	<p>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p> <p>② 법 제6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2.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공급사업 [본조신설 2019. 1. 22.] <p>[제28조의4에서 이동 <2021. 11. 2.>]</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예 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개정 2022. 1.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2.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p>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p> <p>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3조의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예 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 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p> <p>②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국제기구의 경우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 5.></p> <p>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p>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p> <p>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p>	<p>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6.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창출 효과 2. 인구유입 유발효과 3.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4.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p>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11.]</p> <p>제29조의3(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① 건설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법 제63조의9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의 건립 및 부지의 조성. 이 경우 대학이 임대하여 입주할 수 있는 시설 및 부지는 법 제63조의9제4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부지의 임대·공급 등 공동캠퍼스의 관리 및 운영 3. 공동 교육·연구, 학제(學際)간 융합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청장이 정하는 사항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24.]</p> <p>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p> <p>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⑦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p>⑧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본조신설 2017. 10. 24.]</p>	<p>법 제63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3.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연구기관 <p>[본조신설 2018. 4. 24.]</p> <p>제29조의5(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① 법 제63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캠퍼스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계획 2. 재원확보계획 3.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 4.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서류 <p>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입주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건설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기준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3.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p> <p>4. 그 밖에 입주승인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24.]</p> <p>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①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②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p>③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캠퍼스 시설의 운영·관리 2. 공동캠퍼스의 대외 교류협력·홍보 3. 공동캠퍼스의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4.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을 위한 연구실·도서관 등의 시설 운영 5. 입주기관 유치·지원 및 입주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6. 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에 관한 의 견제시 7. 법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 또는 출연한 공동캠퍼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p>[본조신설 2018. 4. 24.]</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8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p> <p>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p>	<p>제29조의7(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0조(증표)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공무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 2. 검사기간 3.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한다는 사실 4. 증표의 발행일 5. 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명의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관리청으로 본다.<개정 202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구거(溝渠) 등: 국토교통부장관 1의2. 하천: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재산: 기획재정부장관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p> <p>제67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제31조(업무의 위탁) ① 건설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4호 및 이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p> <p>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0. 11. 24.></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벌칙</p> <p>제69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p>[전문개정 2014. 6. 11.]</p> <p>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시행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p>③ 건설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8. 11. 26.]</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p>
<p>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법률 제18947호, 2022. 6. 10.)</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지방자치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부터 <66>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

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시청사
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교육청사
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소방서
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5.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6.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아트센터
7.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광역복지시설
8.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은하수공원
9.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119특수구조단
10.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종합체육시설
11.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환승주차장
1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창의진로교육원
13.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평생교육원
14.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지식산업센터
15. 제39조제15호에 따라 설치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16.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행복아파트
17. 제5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경로복지관



CHAPTER 0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small>[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small>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small>[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small>
<p>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박물관단지”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체험관”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p>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제4조(설립) ①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p>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p>② 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6조(사업)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립박물관단지 공동·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p>제2조(박물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할 학문적·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항 8.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9. 연계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연계시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국립박물관단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청장에게 인정받거나 위탁받은 사업 <p>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마다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도시·건축·디자인·문화유산·국가기록 등과 관련된 역사·인류·고고·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p>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박물관단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임대 3.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기념품·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판매 4.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보급 5. 국립박물관단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제7조(임직원) ①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 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p> <p>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p> <p>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p> <p>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p>	<p>②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계획서 3. 수익사업에 관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p>③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p> <p>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독한다.</p> <p>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p> <p>④ 감사는 지원센터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p> <p>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p> <p>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p>제12조(이사회) ① 지원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행정중심복합도시법 · 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박물관단지법 · 시행령

건설청장 직제 ·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3조(자원) ①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 개인·기관·법인·단체의 찬조금·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p>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p>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p>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p> <p>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출연금등을 지급한다.</p> <p>③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p> <p>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제6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받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p> <p>②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p> <p>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②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이사장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p>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국가는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건설청장이 관리하던 국가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가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이사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p>	<p>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 ①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에 훼손·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 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p>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p> <p>③ 이사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제20조(감독) ① 건설청장은 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건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비밀엄수 의무)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23조(「민법」의 준용)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건설청장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p> <p>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책임경영·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조직·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2.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3. 고객만족도·국민체감도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p>③ 건설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기준·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2.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8953호, 2022. 6. 1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원센터의 설립준비) ① 건설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원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설립위원회는 지원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건설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원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회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지원센터의 설립을 	<p>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32900호, 2022. 9. 6.></p> <p>이 영은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건설청장이 부담한다. ⑦ 건설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2. 6. 10.] 제2조</p> <p>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립박물관단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립박물관단지 건립·운영에 한정한다)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p> <p>제5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p>	

행정중심복합도시법·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박물관단지법·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법·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53호, 2022. 6. 10.,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시행 2022. 9. 11.] [시행령 제32900호, 2022. 9. 6., 제정]</p>
<p>제6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지원센터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 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p> <p>[시행일: 2022. 6. 10.] 제6조</p>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건설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건설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200	300	400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제2호	150	250	350



CHAPTER **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small>[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small>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small>[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small>
<p>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삭제 <2015. 1. 6.></p> <p>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제4조(하부조직) ① 건설청에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개정 2011. 6. 7., 2022. 5. 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개정 2011. 6. 7.></p> <p>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 12. 11.></p> <p>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개정 2013. 3. 2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p> <p>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p>
<p>〈개정 2011. 6. 7., 2011. 10.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p>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13. 9. 30., 2018. 1. 23., 2019.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청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9.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주민의 불편해소·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이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 <p>[전문개정 2011. 6. 7.]</p>	<p>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p> <p>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 9. 30., 2018. 1. 25.〉</p> <p>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
<p>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p> <p>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6. 7., 2012. 6. 29., 2013. 3. 23.,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p>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전지원 등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이주민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지원 13.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13. 9. 30., 2015. 1. 9., 2018. 1.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내 정부혁신 업무의 총괄·조정 1의2.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p>[전문개정 2011. 6. 21.]</p> <p>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p>
<p>5. 보안 및 관인의 관리</p> <p>6. 문서의 분류·접수·발송</p> <p>7. 기록물의 보존·이관·평가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8. 자료실의 운영·관리 및 청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p> <p>9.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p> <p>10.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p> <p>11.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제9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p> <p>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29., 2019. 3. 26., 2021. 12. 14., 2022. 5.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계획과 성장전략 수립 등 도시 기획업무 2. 문화시설·교육시설·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3. 도시 건설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 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6.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과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운영 8.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9.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10.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11. 예정지역 등에서의 행위허가 12.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13. 공공시설의 관리·이관에 관한 사항 14. 주택·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5.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6. 환경·재해 관련 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p>제6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6. 21.></p> <p>② 도시계획국에 도시정책과·도시성장추진과·도시공간건축과·녹색에너지환경과 및 스마트도시팀을 두되,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성장추진과장, 도시공간건축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스마트도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29., 2022. 5. 10.></p> <p>③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9. 30., 2015. 1. 9., 2019. 3.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수립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8. 삭제<2015. 1. 9.> 9.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small>[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small>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small>[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8.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0.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 보안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2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p>[전문개정 2011. 6.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삭제<2015. 1. 9.> 12.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관리 13.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1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15. 도시계획 기준의 제정·운영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운영 17.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18.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설치 및 관리 1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④ 도시성장축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9., 2018. 1. 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유치 및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지원 6. 벤처기업 등 첨단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해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1. 투자정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 13.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공동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⑤ 도시공간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2.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3.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개정 4.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행복도시법·시행규칙

행복도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행복도시법시행규칙
직제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건축정책 및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6.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지역·지구·구역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8. 주택·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9. 공원·녹지의 조성계획 승인·관리 등 업무 총괄 10.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색채에 관한 사항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12. 단독주택·상업용지 등 도시 공간 특화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⑥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5.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총괄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8.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신·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도입 10. 하천의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⑦ 스마트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 29., 2021. 12. 14., 2022. 5. 1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3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4.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
<p>제10조(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개정 2022. 5. 9.></p> <p>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29., 2022. 5.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2.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3. 교통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2022. 5. 9.> 8. 삭제<2022. 5. 9.> 9. 삭제<2022. 5. 9.> 10. 삭제<2022. 5. 9.> 11.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토지 등의 취득·보상 및 수용재결 등에 관한 사항 13.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14.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15. 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6.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p>[제목개정 2022. 5. 9.]</p>	<p>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 9.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10.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p>⑧ 삭제<2011. 6. 21.> [제목개정 2011. 6. 21.]</p> <p>제7조(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2022. 5. 10.></p> <p>② 시설사업국에 사업관리총괄과·교통계획과·광역도로과 및 공공청사기획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계획과장, 광역도로과장 및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6. 21., 2013. 9. 30., 2015. 1. 9., 2019. 1. 29., 2022. 5. 10.></p> <p>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6. 21., 2012. 6. 29., 2013. 9. 30., 2015. 5. 26., 2022. 5.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 삭제<2018. 1. 25.>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9.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0.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사업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④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9. 30., 2015. 5. 26.></p>

행복도시법 시행규칙

행복도시법시행규칙

행복도시법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p>
<p>제11조 삭제<2011. 6.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통·유통·공급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 부속물 등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노외 및 노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터미널, 차고지 등 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9. 지역 간 교통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p>⑤ 광역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 9. 30., 2015.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2015. 5. 26.> 3.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p>3의2. 광역도로 건설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감리용역 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 운영 5.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p>⑥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5.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4. 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특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p>⑦ 삭제<2019. 1. 29.> [제목개정 2022. 5. 10.]</p> <p>제8조 삭제 <2011. 6. 21.></p>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small>[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small>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small>[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small>
<p>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p> <p>제13조 삭제<2015. 1. 6.></p> <p>제14조 삭제<2015. 1. 6.></p> <p>제15조 삭제<2015. 1. 6.></p> <p>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8. 6. 5., 2021. 1. 19.></p> <p>②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4. 6. 5., 2018. 6. 5., 2019. 1. 29.></p> <p>③ 삭제<2018. 6. 5.></p> <p>④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7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국토교통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p>	<p>제9조 삭제<2015. 1. 9.></p> <p>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 2015. 1. 9., 2018. 6. 5., 2021. 1. 20.></p> <p>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박물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6. 5., 2021. 1. 20.></p>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p>
<p>제17조(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 3. 26., 2021. 1. 19.></p> <p>②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19. 3. 26., 2021. 1. 19.></p> <p>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 3. 30.> [본조신설 2018. 1. 23.]</p> <p>제18조(공공시설건축과) ① 건설청 시설사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시설건축과를 둔다. <개정 2022. 5. 9.></p>	<p>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11조 삭제 <2015. 1. 9.></p> <p>제11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제12조(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개정 2019. 3. 26., 2021. 1. 20.></p> <p>②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19. 3. 26., 2021. 1. 20.></p> <p>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신설 2021. 3. 31.> [본조신설 2018. 1. 25.] [중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 25.>]</p> <p>제13조(공공시설건축과) ① 공공시설건축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공시설건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2. 5. 10.]</p>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small>[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일부개정]</small>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small>[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일부개정]</small>
<p>② 공공시설건축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개정 2022. 5. 9.></p> <p>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 5.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복지·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복지·보건 및 체육 시설의 설계·시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복지·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복지·보건 및 체육 시설의 운영지원 및 특화에 관한 사항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7. 도시 내 역사공원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건설 관련 문화재 조사에 관한 사항 <p>④ 공공시설건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2. 5. 9.></p> <p>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p> <p>[본조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22. 5. 9.]</p> <p>부 칙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p> <p>이 영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p> <p>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행복도시법 시행령

행복도시법시행규칙
시행령

행복도시법
직제 시행규칙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별표 1] 삭제 <2015. 1.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7조 관련)

1. 제1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3년 1월 24일)

총계	3
일반직 계	3
6급 이하	3

2. 제17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3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3. 제17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3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7급	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별표 4] <개정 2022. 5.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4항 관련)

공공시설건축과(존속기한: 2023년 6월 30일)

총계	5
일반직 계	5
3급 또는 4급 이하	5

행복도시법
시행령

행복도시법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행복도시법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137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136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간호주사 또는 보건주사	2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7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8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2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전산주사보	1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사무운영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138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137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4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간호주사 또는 보건주사	2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7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8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2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

전산주사보	1
전산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사무운영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7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삭제 <개정 2016. 5. 3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5.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3조 관련)

공공시설건축과(존속기한: 2023년 6월 30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부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39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재정 자주권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책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관할구역) ① 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은 각각 제외한다.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삭제 <2017. 4. 18.>
-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와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12.>

제12조(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특례) ①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2023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 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7.>

[법률 제18543호(2021. 12. 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5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제16조(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시장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8명으로 한다. <개정 2018. 3. 9., 2022. 4. 20.>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5. 6. 19.>

⑤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한다.
2. 삭제 <2015. 8. 13.>
3.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 1개소를 둘 수 있다.
4.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로 한다.
5. 「공직선거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방송시설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시·도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
6. 삭제 <2015. 8. 13.>

제20조(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국내거소신고 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6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 12.>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시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⑤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시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그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 3. 20.>
[제목개정 2018. 3. 20.]

제2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8839호, 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7.>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4. 7. 7.>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나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이주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마.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다른 지역에 위치한 국가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행정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수행하는 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나.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 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협약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다. 협약에 따른 평가결과와 그 활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 대전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남도지사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
-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30., 2014. 7. 7.>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 3. 3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2021. 8. 6.>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차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차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2. 대전광역시 부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충청북도 부지사 및 충청남도의 부지사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각각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 3. 30.>

제7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7. 7.>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 의뢰)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지원단의 직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4. 7. 7.>

부칙 <제31931호, 2021. 8. 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법령집

|인 쇄 일| 2022년 9월

|발 행 일| 2022년 9월

|발 행 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혁신행정담당관
우) 30103

|홈페이지| www.naacc.go.kr

|인 쇄 처| (주) 삼일기획
